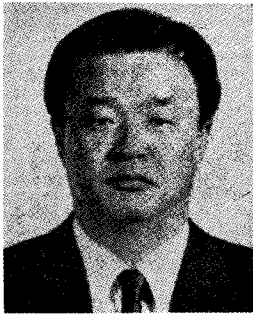


中國 商標制度(完)



宋 晚 鎬
〈辨理士〉

목 차

1. 근거법규
2. 중국상표법의 목적
3. 상표등록요건
4. 출원원칙 및 요건
5. 심사절차
6. 상표권
7. 상표권자의 보호
8. 중국상표법의 개정방향
9. 1991년도 중국상표관련 통계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號〉

〈前號에서 계속〉

7. 상표권자의 보호

가.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등록사정된 상표 및 그 상표사용이 허용된 상품에 그 효력이 제한된다.

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1)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그의 등록상표의 표시를 위조, 모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

(3) 타인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행위

(4)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단어, 문자, 형상, 장치 등)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5) 타인에게 고의적으로 창고, 운송시스템, 우편시스템, 기타 은폐장소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

다. 상표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및 방법

(1) 구제절차

상표권자를 포함하여 침해를 받은 자는 상표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자가 소재하는 소재지 또는 권리침해행위지의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침해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상표권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의 표시를 위조, 모조하거나 판매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직접 제소하여 형사적처벌을 구할 수 있다.

(2) 구제방법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상표전용권의 침해행위

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ㄱ) 침해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금지명령

(ㄴ) 손해배상의 명령

(ㄷ) 침해행위가 심각한 경우, 비판문을 공표하며 아울러 불법매상액의 20% 이하 또는 불법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벌금부과

(3). 허위표시의 죄

타인의 등록상표를 자신의 등록상표인 것같이 허위로 표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그 대리기관에 고소하거나 그 허위표시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허위표시의 행위에 대하여 그 침해자를 사법기관에 제소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30조 (1), (2) 및, (3)항(등록상표의 효장의 변경시, 상표권자의 명의, 주소, 기타 등록사항의 변경시, 상표권 이전등록시 일방적으로 변경, 양도한 경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 기관은 상표국에 등록취소를 목적으로 송부하기 전에 상표등록권자에게 지정기간내에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한다.

상표법 제31조 또는 제34조(3)항 (등록상표가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생산되지 않는 품질이 예전보다 조악해진 상품에 사용되어 수요자를 기만할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 기관은 지정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를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불법매상액의 20% 이하 또는 불법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이 유독하거나 유해한 경우 또는 사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분한다.

상표법 제34조(1), (2)항(타인의 등록상표의 허위표시, 부등록사유위반) 및 상표법 실시세칙 제6조(중국의 행정구역상의 지리적명칭 및 외국의 주지의 지리적명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 처분한다.

상표법 제5조(등록상표의 의무적 사용 및 상표등록 불인정대상 상품의 시장판매금지)의

규정에 위반시,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상품의 판매 및 광고 금지명령을 내리고 상표 포장의 봉인 또는 압류조치를 취하고,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불법매상액의 10% 이하의 범위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표법시행세칙 제34조(상표의 포장의 불법적인 제조, 인쇄 또는 판매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공상행정 관리기관은 불법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상표 포장의 봉인 또는 압류조치를 취하고,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불법매상액의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기간 동안에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또는 상표권자를 포함하는 침해를 받은 자가 침해기간 동안에 침해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8. 중국상표법의 개정방향

상표국은 현행 상표법을 8년동안 실시해본 결과 중국의 현실에 적합하고 경제발전을 긍정적으로 촉진시키는데 유익한 법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나 9년째에 접어들면서부터 국가의 현실적인 경제제요구에 완전하게 부응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1989년 말부터 개정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중국상표법의 주요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상표보호대상의 확대

1980년대 초기의 중국의 경제상황과 상표법은 제정되었으나 실천한 경험이 부족했던 당시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현행상표법은 서비스표(服務商標)는 물론 단체표장(集體商標), 증명상표(證明商標) 및 방호표장(防禦商標)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재, 중국은 서비스업 분야의 장족적인 발전으로 서비스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기

업의 의욕을 고취하고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질 및 출처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를 상표보호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상표법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상품경제의 성장발전으로 단체표장, 증명상표 및 방호표장에 대한 등록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해서도 개정작업 때 상표보호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파리조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은 주지상표(名商標)의 보호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파리조약의 원칙에 부응하는 개정작업이 될 것이다.

나. 등록기간의 단축과 등록절차의 완벽화

중국은 등록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등록된 상표만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사용중이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는 상표에 있어서는 신속한 등록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

(1) 등록후 이의신청 제도 도입(Post registration opposition)

현행상표법은 대부분의 세계 여러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등록전의 이의신청절차는 대중의 감시기능의 강화와 심사의 질의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급속한 중국경제의 발전속도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를 조금이라도 일찍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요구에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절차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등록전에 신청하는 것을 등록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현행상표법의 특징적인 상표쟁의재정절차와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연장할 예정이다.

(2) 거절예고절차의 도입

출원인의 이익보호라는 견지에서 거절예고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왜냐하면 출원서 내용을 보정하므로써 거절이유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거절사정만 뒤 불복항고를 강제하는 것은 출원인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등록상표 취소제도를 등록상표무효제도로 대체

현행상표법은 등록상표취소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등록상표무효제도로 대체할 예정이다. 즉, 등록후 5년이내에 중대한 흠결사항이 발견된다든지 부적법하게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누구든지 상표국에 등록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다. 법률관계의 합리화 및 상표대리제도의 확립

현행상표법이 제정된 당시의 중국은 경제구조상의 개혁이 막 시작된 때였고 상표제도도 발달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출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출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목적으로 출원인이 소재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공상행정관리기관을 통하여 상표국에 출원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출원서의 검토 및 송부시스템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는 이 기관이 실질적으로 상표대리기구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이 기관의 대리행위는 무료이지만 어느정도 강제적이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기 기관이 상표대리기구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점차적으로 판명되어 그 변화를 시도하였는 바, 1988년에 시행된 상표법실시세칙에는 상표등록출원을 상기 관련주관기관을 경유하거나 또는 상표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1990년에는 상표대리제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하에 법적절차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상표대리업무를 상표대리인에게 완전히 일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공상행정관리 부분의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외국인) : 47,859건

라. 등록상표의 독점권보호의 강화

상표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등록상표의 독점권보호에 관하여 현행상표법은 침해행위를 하는 침해자에게 민사적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적책임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현행상표법은 실무를 통하여 등록상표의 독점권보호가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국내상황에 적합한 수단임이 밝혀졌으며 또한 외국의 중국상표등록권자에게도 매우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현재의 독점권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 처벌의 강화

상표침해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행정처리도 하는 쌍벌제(雙罰制)를 적용할 것이다.

침해행위가 판명되면 허위표시한 상품을 몰수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을 압류한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도 몰수한다. 동시에 상당히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

(2) 침해자의 형사책임의 가중

현행상표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형사적 침해행위에 대해 좀더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좀더 가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관련유관기관과 협의하면서 중국형법상의 개정도 고려중에 있다.

1991년도 출원, 등록현황

항목 \ 건수	내국인	외국인	마드리드 국제등록	합 계
출 원	59,124	5,885	2,595	67,604
심 사	36,795	3,845	-	40,640
거 절	15,813	2,256	675	18,744
등 록	34,501	3,523	2,306	40,330
변경등록	4,649	813	58	5,520
이전등록	1,022	947	30	1,999
갱신등록	-	139	-	139
소멸·취소	745	67	-	812

1991년말 현재 주요국가의 중국상표등록현황

국가명	건수	국가명	건수	국가명	건수
호주	311	북한	4	싱가포르	240
오스트리아	244	한국	234	소련	58
베네룩스	1,037	프랑스	3,427	스페인	420
캐나다	349	독일	5,538	스웨덴	528
체코슬로바키아	342	홍콩	2,863	스위스	2,844
덴마크	272	이태리	2,190	영국	3,556
핀란드	152	일본	8,764	미국	13,777

1991년도 평심신청현황

항목 \ 건수	내국인	외국인	합 계
박회복심신청(거사불복)	856	735	1,591
이의복심신청(이의결정불복)	41	21	62
주책상표쟁의신청(저촉판정)	20	9	29
주책부당상표재정신청(취소심판)	37	19	56
불복철소주책상표신청(취소결정불복)	-	1	1
속전복심신청(갱신등록거절불복)	-	-	-
전양복심신청(이전등록거절불복)	-	-	-
합 계	954	785	1,739

9. 1991년도 중국상표관련 통계

1991년말 현재 총 유효등록상표 : 318,915건
(내국인) : 271,056건

1년앞선 특허관리
10년앞선 선진기업